

인천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20나63576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인천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20나63576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5. 22 선고 2019가단26207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성승용

피고, 피항소인 1. A

피고, 항소인 2.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일

담당변호사 곽경권

변론 종결 2021. 6. 11.

판결 선고 2021. 7. 23.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5. 22. 선고 2019가단26207 판결

주 문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항소와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 B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 B가 각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의 가.항 중 "예금한"을 "예금주"로 경정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C과 피고 A 사이에 2019. 1. 28.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A은 C에게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2019. 2. 15. 접수 제142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 B의 계좌 '기업은행(계좌번호 1 생략)'에 관하여 C과 피고 B 사이에 2019. 1. 28.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7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피고 A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가.항과 같은 판결을 구한다.

피고 B: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인천지방법원 2016가단114226호)를 제기하여 2017. 4. 21. 'C은 원고에게 113,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9.부터 2017. 3.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 A은 C의 조카이고, 피고 B은 C의 배우자였다.

다. C은 2019. 1. 2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공유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을 피고 A에게 70,000,000원에 매도하고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2019. 2. 15. 접수 제142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매매대금 70,000,000원은 2019. 1. 28. 피고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입금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내지 3, 7,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C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매매대금을 피고 B과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계좌로 입금받은 것(이하 위 각 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행위'라 한다)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피고 A에게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피고 B에게는 매매대금 70,000,000원의 반환을 각 구한다.

나. 피고들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시세에 상당한 가격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당시 C은 이 사건 토지 지분 외에 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 무자력도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이 사건 처분행위가 있었던 2019. 1. 28.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액은 163,544,548원¹⁾ 인바, 이는 이 사건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채무초과상태 여부

1)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서초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① C은 이 사건 토지 지분 외에도 부천시 J아파트 K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피고 B와 1/2씩 공유하고 있었고, 차량으로는 2007년식 액티언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위 아파트 공유지분의 가액은 193,000,000원이고 위 승용차의 가액은 6,000,000원²⁾ 인 사실, ② 이 사건 아파트 전체에 채무자를 피고 B으로 하는 (주)D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피담보채권액은 229,300,000원이며, C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3,395,210원의 체납보험료 채무가 있었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때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할 때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다. 그러나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이고,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에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이다. 이러한 법리는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3다90402 판결 참조).

이 사건 아파트를 C과 피고 B이 각 1/2지분으로 공유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전체에 채무자를 피고 B으로 하는 (주)D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됨으로써 C의 지분이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그런데 위 증거들과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과 피고 B은 2004. 4. 30. 이 사건 아파트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2007. 10.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 B은 소유권이전등기 당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D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무렵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주)D으로부터 집담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아파트는 C과 피고 B의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주거로 사용되어 왔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C과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전체를 담보로 제공하여 그 매수자금을 (주)D으로부터 대출받았는데 피고 B만 채무자가 되었으므로, C이 자신의 지분으로 변제를 하더라도 아내인 피고 B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든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C의 책임재산은 공유지분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제외한 78,350,000원(=193,000,000원-229,300,000원×1/2)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F은 아래 표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이 사건 토지 지분	70,000,000	원고에 대한 채무	163,544,548
2	자동차	6,000,000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무	3,395,210
3	아파트 공유 지분	78,350,000		
합계	154,350,000		166,939,758	

다. 사해행위의 인정 여부

1) C과 피고 A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 사해행위의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라야 하며 채권자를 해한다 함은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적극재산이 채무의 총액보다 적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채무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한다는 것이 확정되지 아니하고서는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6. 11. 23. 선고 75다1686 판결 참조).

살피건대, C이 피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증거들과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이 사건 아파트 등 이 사건 토지 지분 외에도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C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처분한 대신 그에 상응하는 매매대금 채권이 발생하여 곧바로 매매대금이 지급된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시세보다 낮게 산정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피고 A은 이 사건 토지 지분과 동일한 지분을 다른 공유자인 F으로부터 C과 같은 금액에 매수하였다)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과 피고 A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C의 채무초과상태가 악화되어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C과 피고 B 사이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채무자와 예금계좌 명의인 사이에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가 그 예금채권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수익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차명계좌에 의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하고 돈을 입금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23298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C은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였던 피고 B과 이 사건 계좌에 관한 예금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70,000,000원을 이 사건 계좌로 송금받았으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C에 대한 채권이 있어 위 70,000,000원을 정당하게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및 원상회복의 방법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 명의로 돈을 송금받은 경우, 수익자가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사용하였다면 사해행위취소와 함께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5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은 위 70,000,000원을

자신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다가 2020. 6. 5. 이를 인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2019. 1. 28.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은 7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항소와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주문 제1의 가.항 중 "예금한" 부분은 "예금주"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인식

판사이대로

판사이혜선

별지

1) 산식 :

$$\textcircled{1} 113,400,000 \times [3 + 120/365, (=2013.11.29.부터 2017.03.28.까지)] \times 5\% = 18,874,110$$

$$\textcircled{2} 113,400,000 \times [1 + 306/365, (=2017.03.29.부터 2019.01.28.까지)] \times 15\% =$$

31,270,438

이자 합계 50,144,548원, 원리금 합계 163,544,548원

2) 원고는 제1심에서는 위 차량의 가액을 출고가인 24,520,000원으로 계산하였다가 당심에서는 이를 최대 6,000,000원이라고 주장하는바, 위 차량의 종류와 연식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인정함이 상당하다.